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1. 18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. 11. 18

다. 상정일자 : 제115회 사하구의회 (제2차 정례회)

제 5차 총무위원회(2003. 12. 18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장일룡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일·숙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에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, 법령개정에 따른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일·숙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제4항 신설)
-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(안 제22조제6호)

3. 관계법령

-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본 개정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무원의 일·숙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려는 것과 다양한 사회로 변화되는 시대에 부응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단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사료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